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48
----------	-----

2021. 6. 23.(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 원감희 의원 등 7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 6월 9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원감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4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7조, 제8조)
-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우리 도는 본 조례를 근거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벼 재배 농업인에게 ha당 9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문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 되었음

나. 주요 검토내용

○ 인용하는 상위법령 조문 수정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2015.6.22. 법률 제13383호)이 제정되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명 변경 및 내용 정비
- 개정조문 :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 4조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2020년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관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제명 변경 및 내용 정비
- 개정조문 : 제5조, 제7조, 제8조

-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문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미비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건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작물재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4조 중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를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사를”로,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농작물재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p> <p>2. “농작물재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p>
<p>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u>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 ----- ----- ----- ----- <u>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u>-----.</p>
<p>제5조(경영안정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벼 재배농업인</u>으로서 「<u>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u>」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최대</p>	<p>제5조(경영안정지원) ----- ----- ----- ----- ----- ----- ----- ----- ----- -----.</p> <p>1. -----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u>」 제8조와 제9조-----</p>

현행	개정안
<p>지원범위는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p> <p>2. (생략)</p> <p>제7조(지원 신청)</p> <p>① ~ ② (생략)</p> <p>③ 「<u>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u>」 제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제8조(대상 선정) ① 경영안정 지원 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u>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u> 또는 「<u>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u>」 제8조 제5항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된 <u>심사위원회</u> (이하 “<u>심의회</u>”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호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u>심의회</u>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p> <p>2.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원 신청)</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u>」 제15조----- -----.</p> <p>제8조(대상 선정) ①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u> 또는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u>」 제15조제2항---<u>조사위원회</u> (이하 “<u>위원회</u>”라 한다) 조사를 ----- ----- -----<u>위원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5.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서의 제한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지역·단지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① 읍·면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